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2월 11일

나. 발 의 자 : 장미경, 강승수, 권기만, 김재우, 김춘남, 박교상,
송용자, 신문식, 안장환, 안주찬,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세구, 최경동 의원(15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2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2월 12일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장미경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2018.11.30)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별표 1)

연도	지급액
2019년도	월 2,199,000원
2020년도	'19년 월정수당에 '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도	'20년 월정수당에 '20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도	'21년 월정수당에 '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각각 개정함(안 별표 2)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안 별표 2)

구 분	현 행 (단위 : 원)					개 정 안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 일비 20,000원(1일당), 식비 25,000원(1일당) 변경 없음.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안 별표 2)

－ 현 행

(단위: 미 달러화(\$))

지급 기준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 개 정 안 : 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 구분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의 장 부의장	1등석 정액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의원	2등석 정액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조 장 근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와 여비를 의결하여 통보해움에 따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여비를 조정 하는 것으로,
-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변동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내년도인 2019년도는 올해와 동일한 2,199,000원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절반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임.
- 또한 여비는 올해 1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